

## 충청북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260
----------	-----

제출연월일 : 2004년 월 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 제안이유

- 지난 '87년부터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양양을 도모하고 교육훈련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을 위하여 설치·운영해 왔으나,
- 시중의 금리인하로 이자수입액이 낮아 적정규모의 시상금 지급이 어려워 이 기금을 폐지하여 일반회계에 귀속하고, 시상경비 전액을 2005년부터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폐지 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 충청북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조례 폐지

### □ 의안전문 : 따로붙임

### □ 관계법령 발췌 : 따로붙임

## 충청북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조례폐지조례안

충청북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조례(조례 제2559호, 2000.3.13)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 第133條 (財産 및 基金의 設置)

①地方自治團體는 行政目的의 達成을 위하여 또는 公益上 필요한 경우에는 財産을 保有하거나, 特정한 資金의 運用을 위한 基金을 설치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財産의 保有, 基金의 設置·運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條例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 第110條 (基金의 運用등)

①地方自治法 第133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하는 基金은 條例로 정하는 특별한 目的을 위하여 적당하고 효율적으로 運用하여야 한다.

## 충청북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조례

제정 2000. 3. 13 조례 제255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양양을 도모하고 교육훈련 우수공무원에게 시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하기 위해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 설치한 충청북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이하 “기금”이라고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대상자) 교육상은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이수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성적우수자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과정으로 교육훈련 기간이 2주이상이고 교육훈련 평가가 실시되는 과정
2. 교육운영유공자 : 각 과정별 교육생자치회의 임원
3. 우수분임 : 분임토의 평가결과 최우수 및 우수 분임조

제3조(시상시기 및 시상금·품 등) ①교육상은 교육원장이 매 교육과정의 수료시에 시상한다.

②성적우수자는 별표 1에서 정한 서식의 상장 및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범위내에서 시상금을 수여한다.

③교육운영유공자와 우수분임의 시상금·품은 교육원장이 따로 정한다.

④교육원장은 수상자 명부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설치)

①제3조에서 규정한 시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교육원에 기금을 설치한다.

②기금설치 당시의 기금액은 171백만원으로 한다.

③시상금의 집행은 기금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되 시상금의 지급총액은 전년도 기금운용 수익금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통령 특별지원금
2.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3. 기타 수입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교육원장이 운영·관리한다.

②기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되 수익과 안전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관리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③기금관리는 세입·세출외현금 「공무원교육시상기금」 구조로 한다.

④교육원장은 기금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⑤기금의 출납은 예산회계법령과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 예탁증서, 지급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계획) ①교육원장은 매년 1월31일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전년도 시상금 지급금액 및 당해년도 지급계획
3. 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교육상 운영위원회) ①교육원장은 교육상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교육 상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교육원 간부직원중에서 임명한다.

③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상대상 교육과정의 선정 및 수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적립 및 운용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상의 운영 및 기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감독)도지사는 교육원의 기금운용을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및 장부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